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7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관계 협회 의견	8
2.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총 46개)	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출연월일 : 2024. 6.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뉴스통신법 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이나 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선임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삭 제>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제36조(양벌규정) ----- ----- ----- ---- 제34조----- ----- ----- ----- ----- ----- -----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1. ~ 3. (생 략) ② (생 략)	-----. 제37조(과태료) ① ----- -----.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관련 조문: 법 제9조제1항¹⁾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

2. 검토의견

2022년 6월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의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의 정책 추진을 발표하고, 민간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형벌조항 검토에 착수하였음.

이후 2022년 8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1차 개선 과제 32건의 법령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어 2차 개선과제(108건, 2023.3.), 3차 개선과제(46건, 2023.10.) 등을 선정하여 기존의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온 바, 개정안은 3차 개선과제에 포함된 경제형벌 완화사항임.

현행법은 뉴스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허위 등록 또는 무등록으로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을, 현행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하거나 이를 선임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을, 현행법 상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7조)를 정하고 있음.

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표 1] 현행 벌칙 규정 개요

구분		제재 행위
행정형벌	법 제3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대기업의 언론지분 제한)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법 제3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 현행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행정질서벌	법 제37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 외국법인·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은 사실에 관한 서류를 등록 시 또는 기간(15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대기업의 언론지분 제한)에 관한 자료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뉴스통신의 명칭, 주소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은 현행법의 벌칙규정 중 법 제35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하거나 이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을 행정제재³⁾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3) 벌금과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과태료는 통상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는 행정질서벌이며, 벌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과거의 중대한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로 행정형벌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이에 따라 부과주체 및 불복 절차 등에도 차이가 있음. 특정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음.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아 이를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과거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음.

한편, 유사 분야 법률로서 「신문법」은 벌칙규정으로 벌금 없이 과태료에 의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과 유사한 위반사항인 ‘법률상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하거나 이를 선임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처벌규정 완화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 1997. 8. 21. 선고 93헌바51

어떤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입법목적이나 입법당시의 실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벌금 비교]

구분	과태료	벌금
개념	(행정질서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 범죄인에 대한 금전 지불의무를 부과하는 형벌
부과주체	행정청, 이의제기시 법원	법원
불복 시 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	형사소송법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뉴스통신사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취임한 경우 뉴스통신사에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⁵⁾, 사업정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4조) 부과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뉴스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벌금에서 과태료로 법적 제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80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고 1

관계 협회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온라인 신문협회 (2024.7.12.)	뉴스통신사업자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벌금에서 과태료로 법적 제재를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

참고 2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요약(총 46개)

연번	법률명	구성요건	개선방안
1. 생활밀착형 규정(14개 과제)			
1	폐기물관리법 §66·4의4(§18③ 관련)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백만원 (거짓 입력 등은 유지)
2	대기환경보전법 §90·4의3(§39① 관련)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3백만원 (거짓 기록 등은 유지)
3~4	정보통신공사업법 §74·3(§17①·1, 2 관련)	공사업의 양도, 합병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5~6	영화비디오법 §94·2, §95·10 (§29⑤, §62② 관련)	(§94·2)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95·10)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형량조정> (§94·2) 2년, 2천만원 (§95·10) 1년, 1천만원
7	사회복지사업법 §55(§13② 단서 관련)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과태료 3백만원
8	장애인복지법 §87·6(§59②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사업정지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9~10	항만법 §110·1(§12⑤ 단서, §58⑤ 단서 관련)	준공확인 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11~12	옥외광고물법 §18②·1, 2(§3, §3의2 관련)	공공시설물 등에 미신고(변경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13~14	하천법 §96·3, §96·8 (§75③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허가나 타인의 토지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원상회복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15개 과제)			
15~20	자본시장법 §446·16, §446·54 (§91①, §186②, §113①, §280③, §338, §356 관련)	(§446·16)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446·54)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제16호)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행정제재 전환> (제54호)과태료 1억원
21~22	자유무역지역법 §61·3, §61·5 (§34①, §35③, §38③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23	마리나항만법 §38·2(§18④ 관련)	준공 전 사용 신고를 하지않고 토지·시설 등을 사용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4	항만법 §110·3(§38① 관련)	항만시설소유자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점검을 미 실시한 자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5	항만운송사업법 §30·2(§26의3①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
2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47②·2(§17 관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선행정제재-후형벌> 영업정지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7~28	하천법 §95·1, §95·6 (§14②, §39② 관련)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허가취소 등 선 행정명령 부과
29	물류시설법 §65①·4의2(§21의2① 관련)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1천만원
3. 사문화된 규정(10개 과제)			
30	교통안전법 §63·4(§43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기관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1~32	뉴스통신법 §35·1, §35·2(§9① 관련)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등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3	불공정무역조사법 §40②·1(§7② 관련)	수출, 수입, 판매, 제조, 반입, 광고 등을 중지하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2천만원
34~37	수산업협동조합법 §177·1, 12, 14, 16 (§14①단서, §87, §90 관련)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별수협외의 구역을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	<선행정제재-후형벌>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38~39	해수욕장법 §44·3, §45 (§36②, §37② 관련)	(§44·3)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45)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	<형량조정> (§44·3) 1년, 1천만원 <선행정제재-후형벌> (§45) 시정명령 등 선 행정명령 부과
4. 법률 단위 검토과제(7개 과제)			
40~42	선원법 §170·3, §170·4 (§55①, ⑤, §62⑤ 관련)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형량조정>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형량 상향(3년, 3천만원)
43~46	채무자회생법 §653(§319, §320, §322, §578의6 관련)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	<행정제재 전환> 과태료 5백만원